

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9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개정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업종에 따른 기금의 용자한도액과 용자조건을 현실정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
⇒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

나. 업종별 용자한도액 조정(안 제7조)

- 3천만원이하 ⇒ 1천만원 ~ 2억원

다. 용자조건 조정(안 제8조)

- 대부기간 : 3년거치 ⇒ 2년 거치
- 연 이 율 : 5% ⇒ 2%

라. 용어정의, 기금 구성에 대한 관련 인용법령 추가(안 제2조, 안 제3조)

다. 자치법규 및 법령문에 대한 낫표(「 」) 적용(안 제2조, 제10조, 제13조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식품위생법」 제22조 및 제65조
- 나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
- 다.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라. 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」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09. 6. 8. ~ 6. 29)

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(이하 법 이라 한다) 제22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영업자란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2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”로, “신고를 득한”을 “신고를 한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는 “법 제65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3천만원이하로 하되”를 “식품·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,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(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),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로 하고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3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”는 “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”하고, “5퍼센트”는 “2퍼센트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은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.”는 “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관계규정의 준용 등)”을 “(관계규정의 적용 등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표준으로 적용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: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</p> <p>제2조(정의)(생략) 1. <u>“영업자”라 함은 식품위생법(이하 법 이라 한다) 제22조의 규정에 의거</u>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~ 3.(생략)</p> <p>제3조(기금의 조성)(생략) 1. <u>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징수한 금</p> <p>2. ~ 4.(생략)</p> <p>제7조(기금의 용자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별 용자 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,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용자조건 등) ①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36개월 <u>균등분할상환</u>으로 하고, 상환이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하며, 상환기간안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이용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명: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</p> 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영업자란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22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</u> ----- 신고를 한 -----</p> <p>2.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금의 조성)(현행과 같음) 1. 법 제65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-----</p> <p>2. 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기금의 용자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식품·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,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(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),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로 하고,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용자조건 등) ①----- 2년 거치 3년 <u>균등분할 상환</u>으로 ----- 2퍼센트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 (용자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<u>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13조 (관계규정의 준용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<u>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1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<u>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0조(용자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에 따른 ----- --- 「<u>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</u>」에 따른다.</p> <p>제13조(관계규정의 적용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 이외의 사항은 「<u>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표준으로 적용한다.</p> <p>◁삭 제▷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711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9. 2(수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9. 7(월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09. 9. 17(목)

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개정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업종에 따른 기금의 용자한도액과 용자조건을 현실정을 반영하여 조정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띄어쓰기
 - ▶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
⇒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
- 업종별 용자한도액 조정(안 제7조)
 - ▶ 3천만원이하 ⇒ 1천만원 ~ 2억원
- 용자조건 조정(안 제8조)
 - ▶ 대부기간 : 3년거치 ⇒ 2년 거치
 - ▶ 연 이 율 : 5% ⇒ 2%
- 용어정의, 기금 구성에 대한 관련 인용법령 추가(안 제2조, 안 제3조)
- 자치법규 및 법령문에 대한 낫표(「」) 적용(안 제2조, 제10조, 제13조)

4. 근거법규

-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및 제89조
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
-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」

5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성낙팔)

-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한 것으로
- 본 조례 제2조제1호 영업자의 정의에서 인용한 「식품위생법」 “제22조(영업허가 등)” 조문이 “제37조”로 변경되었으며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영업의 허가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인용법령을 추가코자 하는 사항이며
 - 제3조(기금의 조성)에서 인용한 「식품위생법」 “제65조(식품진흥기금)” 조문이 “제89조”로 변경되었으며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(과징금 처분)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도 동 조항에 추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
 - 변경된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및 법령을 추가코자 하며
- 기금의 용자 한도액을 3천만원 이하에서 업종별 한도액을 1천만원~2억원 이내로 조정하고 용자조건도 거치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이율을 5%에서 2%로 조정하는 등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임
- 기금용자에 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기준과 같이 조정코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